

[일련번호 : 1]

## 경 기 도 체 육 회 개 선 요 구

[제 목] 위원회 운영 부적정  
[소 속 기 관] 경기도게이트볼협회  
[내 용]

경기도게이트볼협회(이하 ‘경계협’라 한다)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「경기도게이트볼협회 규정」<sup>1)</sup>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.

경계협은 「규정」 제37조<sup>2)</sup>에 따라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.

경계협 「규정」 제37조는 각종 위원회로 대회위원회, 경기력향상위원회, 선수위원회, 심판위원회, 생활체육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, 위 위원회 이외의 위원회는 이사회 의결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. 또한 모든 위원회는 \*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.

따라서 경계협은 대회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위원회는 \*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1) \*\*\*\*.\*\*\*. 제정 / \*\*\*\*.\*\*\*. 개정 / \*\*\*\*.\*\*\*. 개정 / \*\*\*\*.\*\*\*. 개정

2) 제37조(각종 위원회의 설치) ①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, 경기력향상위원회, 선수위원회, 심판위원회,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.

하지만 경계협은 \*\*\*\*년부터 감사일인 \*\*\*\*년 \*월 현재까지 규정에서 정한 대회위원회를 비롯하여 어떤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.

따라서 경계협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각 분야별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. 아울러, 각종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[조치할 사항]** 경기도게이트볼협회장은

「규정」 제37조에 따라 이사회 자문기구인 대회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각 분야별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일련번호 : 2]

# 경 기 도 체 육 회

## 시 정 요 구

[제 목]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

[소 속 기 관] 경기도게이트볼협회

[내 용]

경기도게이트볼협회(이하 ‘경게협’라 한다)는 경기도 및 시·군협회 등의 제규정 관리,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설치하고 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.

위원회 규정 제4조<sup>3)</sup>를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\*인, 부위원장 \*명 이하, 위원 \*\*명 이하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로 구성해야 하며, 제5조<sup>4)</sup> 제2항에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또한 제9조<sup>5)</sup>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\*분의 \*이상의 찬성으로, 그 외의 사항

3) 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\*인
2. 부위원장 \*명 이하
3. 위원 \*\*명 이하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4) 제5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5) 제9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\*분의 \*이상의 찬성으로,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현재 위원회는 위원장 \*명과 위원 \*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정 제9조에 의거 과반수인 \*명만 출석해도 개회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. 아울러 부위원장은 호선되어 있지 않았다. 현재 위원회 구성은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다.

또한 위원회는 경계협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심의·의결 후 이사회로 발의해야 하나 위원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제 규정을 심의·의결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였다.

### **[표 1]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(기능)**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정관 제38조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**1. 본 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**

2. 본 협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
3. 게이트볼계 표창에 관한 사항
4.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
5.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
6. 시·군회원단체의 임직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, 선수, 동호인, 심판, 클럽(분회)의 징계에 관한 사항
7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[조치할 사항] 경기도게이트볼협회장은

- ① 스포츠평정위원회(위원장 포함) 구성 및 운영과 관련, 스포츠평정위원회 「규정」 제4조(구성)를 적정한 인원 구성으로 조속히 개정하시고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을 충원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께위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
- ③ 경기도게이트볼협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할 시 스포츠평정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의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